

엘리베이터 A/S 작업 중 카와 벽체 사이에 끼임

공사명	OOOOO 아파트 현장	발생일시	2019.7.10.(수) 09:29분경
재해형태	끼임	재해정도	사망 1명
소재지	부산광역시 OO구 소재	공사규모	아파트 17개동
재해개요	2019. 7.10.(수) 09:29분경, OOOO에서 시공 중인 「OOOOO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」 OOO동 3, 4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도어 소음 및 버튼 불량 A/S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엘리베이터 승강로 지상 1층과 2층 사이 엘리베이터 카와 벽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.		
재 해 상 황 도			
			
재해발생 원인	○ 승강기 정비·보수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조치 등 미실시 - 수리·교체·점검 등의 작업시 불시에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운전모드를 점검 상태로 전환하거나, 운전 정지 조치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 ☞ 승강기의 운전모드를 “정상(자동)”으로 둔 상태로 별도의 운전 정지 조치 없이 작업 실시 ○ 승강기 정비·보수 등의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실시 -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,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,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. ☞ 작업지휘자 및 작업구역 출입 금지 조치 등이 없이 재해자 단독 작업 실시 ○ 작업지휘자 미배치 및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- 작업지휘자 없이 적합한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실시		
예방대책	○ 승강기 정비·보수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조치 등 실시 - 수리·교체·점검 등의 작업 시 불시에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운전모드를 점검 상태로 전환하거나, 운전 정지 조치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 ○ 승강기 정비·보수 등의 작업 시 안전 조치 실시 -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,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,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 ○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관리 감독 실시 - 작업지휘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야 함.		



사고 현장 전경(재해자 혈흔)



사고 현장 전경